

◀ 근로 계약서 ▶

1.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2016년 「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자」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○ 사업(업무)내용 : 도로 등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 보수

○ 작업 장소 : 성북구 관내 일원

○ 근로 기간 : 2016. 2월~12월 (예산여건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)

○ 임금 등 급여조건

- 1일단가 : 60,680원 (8시간 기준)

※ 성북구 2016년 생활임금단가 (시급 : 7,585원)

- 1일의 임금 및 지급방법

· 월급으로 지급(다음달 5일 이내. 단,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)

·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

- 1주 만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

-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

○ 근무시간(예시)

- 월 ~ 금요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, 휴게시간 : 12:00~13:00(1시간)

3. 기타 사항

○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, 지각, 조퇴, 무단음주, 취중출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(징계처분에 의해 사업참여 불허)

2016. . .

성 북 구 청 장 (인)

※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,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.

성 명

주민번호

(인 또는 서명)

기간제근로자 근무·안전수칙 준수 각서

본인은 도로보수 유지관리 인력으로서 아래와 같은 근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, 철저히 이행하겠음을 확약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1. 근무수칙

- 가. 근로자는 우리 우리구에서 업무상 숙지한 내용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.
- 나. 근로자는 근무에 임할 때 간편하고 활동이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한다
- 다. 근로자는 작업 도중 감독공무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.
- 라. 근로자는 작업시간내 음주, 도박 등 일체의 유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마. 근로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시민들과 응대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.
- 바. 근로자는 사용한 각종 작업 도구 및 자재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종료후 깨끗하게 청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- 사. 기타 근무시간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폭언, 폭행, 불화조장 등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.

2. 안전수칙

- 가. 모든 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.
- 나. 차량과 다른 근로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다.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함부로 오르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
- 라. 작업장비는 사전 점검요령에 의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모르는 장비 또는 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.
- 마.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바. 지급된 안전보호 장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.
- 사. 감독공무원이 지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모든 민.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2016. 2 . .

위 각서인 성 명 (인)
주민등록번호
주 소

성북구청장 귀하